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358
----------	------

제안년월일 : 2020년 2월 27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송아량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96호), 이준형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97호)을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2020.2.27.)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송아량 의원 외 9명, 이준형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용자 귀책의 도난·분실·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조항을 명시하고,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관련 유아·학생·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및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바,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공공자전거 이용자 귀책의 도난·분실·과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조항을 명시함(안 제12조2 제4항)
- 나. 자전거 안전교육의 실시를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안 제13 조제1항)
- 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아, 학생,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공공자전거의 도난·분실·파손 등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을“(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을 “시장은”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를 “자전거 이용과 관련”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및”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자전거교통안전”을 “자전거 교통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으로, “그

시설에 소요되는”을 “그”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아, 학생,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교통위원회 대안
<p>제12조의2(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등의 설치·운영) ① ~ ③ (생략)</p> <p><신설></p> <p>④ (생략)</p> <p>제13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u>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1. (생략)</p> <p>2. <u>자전거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u></p>	<p>제12조의2(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등의 설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시장은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공공자전거의 도난·분실·파손 등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u></p> <p>⑤ (현행 제 4항과 같음)</p> <p>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① <u>시장은 -----</u> <u>-----</u> <u>----- 자전거 이용과 관련-----</u> <u>----- 실시하여야 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 등 -----</p>

3. 4. (생략)

<신설>

<신설>

②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3.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아, 학생,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 자전거 교통안전 -----

-----.

⑤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
----- 그 -----

-----.